

# 한국모태펀드

## 2020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변경공고

2020년도 한국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20.4.13.공고)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 항 목      | 세 부 내 용   |   |
|----------|---|---|
| 출자 규모    | 총 835억원 이내<br>(특허 360억원, 해양 100억원, 스포츠 130억원, 연구개발특구 95억원, 보건 150억원)  |   |
| 투자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li> <li>·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출자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li> <li>· 자세한 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li> </ul>                                       |   |
| 출자 대상 *  | ① 창업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
|          | ②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
|          |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
|          |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
|          | ⑤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으로 창업자·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
| 운용사 선정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
| 접수마감 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 2020년 5월 20일(수), 14:00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li> <li>*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분야는 접수마감일정을 별도 공지 예정</li> </ul>  |   |
| 조합 결성 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li> <li>·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li> <li>* 보건계정 해외진출 분야의 결성시한 기준시점은 한국수출입은행 최종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성시한은 '20년 이내로 한정함</li> </ul> |   |

\* 출자대상 중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일 이후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 계정                 | 분 야                    | 모태펀드<br>출자예산 | 결성<br>목표액 | 모태펀드<br>최대 출자비율 | 신청가능 조합형태  |
|--------------------|------------------------|--------------|-----------|-----------------|--|
| 특허                 | IP기반스타트업육성             | 50           | 80        | 62.5%           | 개인투자조합   |
|                    | 공공IP사업화                | 185          | 460       | 40.3%           |  |
|                    | 특허기술사업화 <sup>주1)</sup> | 125          | 1,250     | 10.0%           |  |
| 해양                 | 해양 신산업                 | 100          | 143       | 70.0%           | 창업투자조합,<br>한국벤처투자조합,<br>신기술사업투자조합,<br>경영참여형<br>사모집합 투자기구 |
| 스포츠 <sup>주2)</sup> | 스포츠산업육성 1              | 100          | 143       | 70.0%           |  |
|                    | 스포츠산업육성 2              | 30           | 43        |                 |  |
| 연구개발특구             | 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 95           | 190       | 50.0%           |  |
| 보건                 | 해외진출 <sup>주3)</sup>    | 150          | 1,000     | 15.0%           | 경영참여형<br>사모집합투자기구  |
| 합 계                |                        | 835 이내       | 3,309 이상  |                 |  |

주1) 성장사다리펀드에서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공동출자자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기술금융투자펀드 6차)의 출자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야 함

주2) 스포츠산업육성 1, 스포츠산업육성 2는 동일 분야로 출자 예산 및 결성 규모 차이만 있음

주3) 해당 분야는 1개 조합 선정 예정이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50억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임.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공동출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에도 최종 선정되어야 함

##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특허<br>IP기반<br>스타트업육성<br>(개인투자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li> <li>단, 지방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며,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되어야 함</li> <li>* 본사 등 주요 사업장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1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중이거나 보유한 기업</li> </ul> |

| 분야  | 주목적 투자 대상  |
|---|--|
| <p style="text-align: center;"><b>공공IP사업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 (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li> <li>단, 공공특허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IP출원지원***에 약정총액의 4% 이상 투자하고,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되어야 함</li> <li>*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li> <li>**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았거나, 본 조합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전받을 기업</li> <li>***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투자</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특허기술사업화</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기술평가 기업<sup>주1)</sup> 및 지식재산권(IP)<sup>주2)</sup> 수익화 등에 투자대상금액*의 8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li> <li>①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30% 이상 투자</li> <li>② 지식재산권 수익화 등에 최소결성금액**의 10%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IP수익화 및 IP출원지원에 6% 이상, 중소기업의 IP창출·보강·분쟁대응에 4% 이상 투자</li> </ul> </li> <li>③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sup>주3)</sup>에 최소결성금액**의 3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 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li> <li>* 투자대상금액 : 총 투자금액</li> <li>** 최소결성금액 :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출자금액 합계액의 2배</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주1) · 우수 기술평가 기업 :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용 TCB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li> <li>· 기술가치평가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li> </ul> <p>주2) · 지식재산권(IP) 수익화 등 : 해외 IP 수익화, IP 출원지원 및 중소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IP 수익화 :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이 창출·출원·보유한(향후 창출·출원 포함) 해외 IP를 수익화 하는 프로젝트</li> <li>· IP 출원 지원 :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프로젝트</li> <li>· 중소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 :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료, 대리 비용, 특허 매입, 라이선스 비용, 특허 전략·보호, 컨설팅 등에 투자금액의 일부가 사용(투자금액의 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되어야 함</li> </ul> <p>주3) · IP프로젝트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p> </div> <p>※ 지식재산권 수익화 등에 대한 주목적 투자 관련 세부 정의 및 주목적 투자비율 등은 공동출자자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p> |

| 분야     |             | 주목적 투자 대상   |
|--------|-------------|---|
| 해양     | 해양 신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18.7) 등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대상 해양신산업* 또는 4차 산업 혁명기술**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해양산업*** 관련 중소·벤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개발, 해양레저, 친환경 선박·기자재, 첨단해양장비, 스마트 해상물류 등</li> <li>** AI, IT, IoT,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li> <li>***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3호의 해양수산업(다만, 동법 제3조3호 가목 등 수산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하며, 조선산업은 포함한다.)</li> </ul>  |
| 스포츠    | 스포츠산업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사업,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에 약정총액의 10% 이상 투자</li> <li>- 단, 아래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li> <li>1) 투자 전, 스포츠 사업 영위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10% 이상인 기업</li> <li>2) 투자 후,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내 스포츠 사업 영위비율 (투자일이 속한 연도부터 투자기간이 종료하는 연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이 10% 이상인 기업</li> <li>*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정책 사업 기준</li> <li>· 스포츠 창업지원센터 보육기업, 스포츠산업 액셀러레이터 사업 참여 스타트업, 스포츠용품시험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선정 기업,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선정 기업, 스포츠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기업 (과거 선정 기업 포함)</li> </ul>  |
| 연구개발특구 | 영·호남 특구기업육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호남<sup>주1)</sup>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 투자해야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li> <li>- 영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 총액의 20%이상 투자하고 호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20%이상 투자</li> <li>- 영·호남 지역에 본점, 연구소, 생산시설 중 하나 이상을 두고 있는 창업초기<sup>주2)</sup> 기업에 약정 총액의 30% 이상 투자</li> <li>주1) (영남)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 (호남) 광주, 전북, 전남</li> <li>주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li> <li>* 연구개발특구 권역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이 출자하는 경우 출자약정금의 2배 이내를 해당 지자체 또는 기관의 권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지자체 및 기관별 세부 의무투자비율은 협의를 통해 정함</li> <li>** 한국벤처투자자와 연구개발특구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본 펀드와 연구개발특구재단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

| 분야 |      | 주목적 투자 대상   |
|----|------|---|
| 보건 | 해외진출 | <p>○ 보건산업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의 해외진출<sup>주1)</sup>에 약정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하되,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40% 이상 투자.</p> <p>① 다음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약정총액의 50%이상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약산업' 영위기업</li> <li>-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약기업' 해당기업</li> <li>-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관련 산업(의료기기 산업) 영위기업</li> <li>-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가 선정한 「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 상 건강·진단 품목<sup>주2)</sup>에 해당되는 사업 영위기업</li> </ul> <p>② 의료서비스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 또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약정총액의 10% 이상 투자</p> <p>* 예시 : ICT 기반 의료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국내 의료기관의 수출 및 해외 투자사업</p> <p>주1) 해외진출 : 조합 해산시점 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li> <li>-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 확장</li> <li>- 외자유치 또는 해외 M&amp;A</li> </ul> <p>주2) 건강·진단 품목 중 반영범위는 정관 협의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논의 후 결정</p> |

#### 4. 주요 출자조건

| 항 목                            | 내 용  |
|--------------------------------|--|
| 업무집행조합원<br>의무출자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b>1% 이상</b>,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5% 이상</li> </ul>  |
| 자조합의<br>투자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가능</li> </ul>  |
| 출자금 납입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br/>(단, 보건계정,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수시납, 연구개발특구는 분할납(3회 이상) 만 가능)</li> <li>* 조기결성방식(Fast-Closing)으로 결성시 수시납 만 가능</li> </ul>   |
| 조기결성방식<br>(Fast-Closing)<br>허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결성규모(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초 결성액이 최소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단,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제외)</li> <li>- Fast-Closing으로 결성시, 모태펀드 출자비율은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출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보건계정 공동출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에도 동일 적용)</li> <li>○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조합 규약(안),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li> <li>* Fast Closing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승인금액 100%를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 제제사항은 다음과 같음</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서 5점 감점</li> <li>- 2020년 관리보수의 20% 삭감</li> <li>- 모태펀드 추가납입 정지 (최소결성금액 100% 완료시까지)</li> </ul> </div> |
| 투자(납입)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해양) 2년 이상 운용사 자율제안</li> <li>○ (스포츠) 2년 이상 4년 이내</li> <li>○ (연구개발특구, 보건) 4년 이내</li> </ul>   |
| 존속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5년 이상 운용사 자율제안</li> <li>○ (해양) 8년 이상</li> <li>○ (스포츠) 5년 이상 8년 이내</li> <li>○ (연구개발특구, 보건) 8년</li> </ul>  |
| 관리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ul> </div>  |

| 항 목                            | 내 용   |  |                                  |                                  |        |        |
|--------------------------------|---|--|----------------------------------|----------------------------------|--------|--------|
| 기준수익률                          | 기준수익률   |  | 계정(분야)                           |                                  |        |        |
|                                | 7% 이상   | 보건(해외진출)                                   |                                  |                                  |        |        |
|                                | 3% 이상   | 특허(공공IP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 연구개발특구(영·호남 특구기업 육성) |                                  |                                  |        |        |
|                                | 2% 이상   | 해양(해양 신산업)·스포츠                             |                                  |                                  |        |        |
|                                | 1% 이상   | 특허(IP기반스타트업육성)                             |                                  |                                  |        |        |
|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   |  |                                  |                                  |        |        |
| 성과보수                           |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                                  |                                  |        |        |
|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                 | ○ (특허, 스포츠 계정. 단,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제외)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br>-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  |  |                                  |                                  |        |        |
|                                |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 조정 전                                       |                                  | 조정                               | 조정 후   |        |
|                                |   | 관리 보수율                                     | 성과 보수율                           |                                  | 관리 보수율 | 성과 보수율 |
|                                | 300억원   | 2.5%                                       | 20%                              | 관리보수율 0.2%p 하향<br>→ 성과보수율 4%p 상향 | 2.3%   | 24%    |
| 500억원                          | 2.3%  | 20%  | 관리보수율 0.3%p 하향<br>→ 성과보수율 6%p 상향 | 2.0%                             | 26%    |        |
| 수탁회사                           |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br>○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br>○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  |                                  |                                  |        |        |
| 회계감사인                          |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   |  |                                  |                                  |        |        |
| 전자보고시스템                        | ○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   |  |                                  |                                  |        |        |
| 기 타                            |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br>○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br>○ (해양)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br>○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br>○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                                  |                                  |        |        |
|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br/>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br/>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p> <p>* 정관에 사업목적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br/>**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p> <p>② 한국벤처투자(주)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p> <p>③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p> <p>④ 후행투자는 조합원총회 특별결의 가결시에만 가능하며, 후행투자 총액은 조합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p> </div> |  |                                  |                                  |        |        |

## 5. 인센티브

| 항 목              | 내 용  |   |
|------------------|--|---|
| 추가 성과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다음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 성과보수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   |
|                  | 순서   | 적용분야 및 추가성과보수율  |
|                  | 고용 창출  | <p>적용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 창출 한 경우</li> <li>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li> <li>③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0.7명 이상의 40대(만 40세~49세,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고용 창출한 경우</li> <li>④ ③의 조건을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1명 이상 달성한 경우</li> </ul>                               |
|                  | 투자 실적  | <p>적용분야 및 추가성과보수율</p> <p>(스포츠 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li> <li>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li> </ul> <p>(특허 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③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li> <li>④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li> </ul>                                     |
|                  | 목적 달성  | <p>적용분야 및 추가성과보수율</p> <p>(특허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li> </ul> <p>(해양계정) 약정총액의 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li> </ul> <p>(스포츠계정) 약정총액의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li> </ul> |
|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4.8)」 관련, '선정 우대기준'의 투자촉진 1안*을 신청하고 이행할 경우 적용(단,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제외)</li> <li>○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세부 적용기준 및 지급률 등은 추후 안내 및 규약협의를 반영 예정</li> </ul> <p>* 투자촉진 1안 : 신청조합 최종 선정시, 2020년에 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의 <b>20%</b> 이상 투자 (구주·해외·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투자는 제외)</p> |   |

## 6. 기타 사항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 3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운용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 가능. 단,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보건계정 해외진출 분야의 경우 한국벤처투자에서 최종선정 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한 제안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국모태펀드에 제안한 서류의 내용과 불일치 사항이 없어야 함.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 (1)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 구분    | 상세내용   | 특허 | 해양 | 스포츠투 | 연구개발특구 | 보건 |
|-------|--|----|----|------|--------|----|
| LP 모집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  | ○  | ○  | ○    | ○      | ○  |
|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보다 5%p 이상 낮게 제안하는 경우                               | ○  | ○  | ○    | ○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경우                                     |    |    | ○    |        | ○  |
| 지방    | 각 출자분야 주목적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  | ○  | ○    | ○      |    |
|       |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    | ○    |        |    |
|       | 영·호남 지역에 본점 또는 사무소가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    |      | ○      |    |
| 기타    |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    | ○      | ○  |
|       | 제안사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 ○  |      |        |    |
|       | 펀드 운용인력 중 1명 이상이 변리사인 경우                                       | ○  |    |      |        |    |

\* LP모집과 지자체 등 출자자 참여 우대사항의 경우 출자자 모집이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하며,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 우대함

\*\* 지방기업 투자 우대사항의 경우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이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인 경우 우대하지 않음

## (2) 2차 심사시 가점 부여

| 구분         | 내용   |
|------------|--|
| 투자촉진<br>1안 | [조건] 신청조합 최종 선정시, 2020년에 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의 20% 이상 투자<br>(구주·해외·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투자는 제외) |
|            | [우대사항]<br>○ 본 조건 선택시 : 금번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심사)에서 가점 5점 부여                        |
|            | [제재사항]<br>○ 본 조건 미이행시 :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에서 5점 감점            |
| 투자촉진<br>2안 | [조건] 신청조합 최종 선정시,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번째 투자 집행 완료<br>(구주·해외·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투자는 제외)   |
|            | [우대사항]<br>○ 본 조건 선택시 : 금번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심사)에서 가점 5점 부여                        |
|            | [제재사항]<br>○ 본 조건 미이행시 :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서 5점 감점             |

### ○ (기타 우대사항) 투자촉진 1안 이행시

-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에 가점 5점 부여
-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출자비율 상향 (1회)
- \* 분야별 출자비율에서 최대 10%p 상향하여 제안가능하며, 출자자별 협의에 따라 최대 10%p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
-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적용을 검토중으로 세부 기준 및 적용률 등 확정 후 규약협의 시 반영예정
- \* 단, 특허기술사업화 분야는 적용되지 않음

## 2. 선정배제·선정보류·선정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마.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기준으로 판정함. 단,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엔젤일 경우 신용등급이 NICE평가정보 기준 9,10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아래 <표>의 기간까지임

| 처분   | 1회 | 2회 이상 |
|------|----|-------|
| 경고   | -  | 1년    |
| 감봉   | 1년 | 2년    |
| 직무정지 | 2년 | 5년    |
| 해임   | 5년 | 5년    |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인력이어야 함
  - \*\*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경력<sup>1)</sup> 또는 기타 투자 경력<sup>2)</sup> 1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운용 전담인력이어야 함.
    - 1)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TIPS운용사,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엔젤의 투자경력
    - 2)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의 투자업무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 펀드 규모                 | 최소 기준 인원 |
|-----------------------|----------|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100억원 이하 | 1명       |
| 300억원 이하              | 2명       |
|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3명       |
| 800억원 초과              | 4명       |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 참고

-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 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 (2)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3)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단,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엔젤일 경우 제외)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아. 신규 운용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된 개인투자조합이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결성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 III.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접수 | '20. 5. 13.(수) 10:00부터<br>'20. 5. 20.(수) 14:00까지 | 제안서 접수 (온라인) |                     |
| 선정 | '20. 6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홈페이지 게재             |
| 결성 | '20. 9월  | 조합 결성 완료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br>이내 |

\*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 분야는 접수마감일정을 별도공지 예정

### I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구분        | 내용   |
|-----------|--|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4.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붙임3. 참조)<br>* 온라인 접수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a href="http://install.k-vic.co.kr">http://install.k-vic.co.kr</a></div> |
| 출자 설명회(안) | - 일 시 : 2020.5.8.(금) 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게시(예정)   |

※ 상기 일정은 특이사항이 발생 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소재부품장비(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매월 7일 수시접수로 진행하며, 주목적 및 출자비율 등은 한국모태펀드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 참고  
(관련 문의 : 02-2156-2016, fof@k-vic.co.kr)
- \* 해당분야 신청시, 가장 최근의 출자사업 제안서 양식을 사용할 것(한국모태펀드 2020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변경공고)

## VI. 문의 방법

- 특허, 해양 계정 : 02-2156-2070, lsy77@k-vic.co.kr
- 스포츠 계정 : 02-2156-2463, joon.kim@k-vic.co.kr
- 연구개발특구계정 : 02-2156-2167, hangs6934@k-vic.co.kr
- 보건계정 : 02-2156-2079, kmc@k-vic.co.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20. 4. 28.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별첨 1> 개인투자조합 신청 가능 운용사

- IP기반스타트업육성 분야는 다음 형태의 운용사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유형 | 업무집행 조합원           | 법적 근거   |
|----|--------------------|---|
| 법인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
|    |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고시기관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경영 지주회사 제외)<br>단, i)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 신기술사업금융업자 ii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iv)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외 |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7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 단, 액셀러레이터(경영, Co-GP 포함)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설립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하여야 함

## 〈별첨 2〉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 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 억원

## [ 개인투자조합 ]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5$
- 신청 자조합 포함,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별첨 3〉

##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 분류       | 주요 평가항목                     |
|----------|-----------------------------|
| 펀드 결성 능력 |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
| 투자집행 역량  |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
| 사후관리 역량  |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
| 수익률      |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
| 기타       |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
| 가점 등     |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

\* 개인투자조합 평가항목 : 조합 운용 안정성, 투자역량, 후속투자 유치, 사후관리 수준, 수익률, 보육역량, 가점 등

## 2차 심의 평가항목

| 분류       | 주요 평가항목             |
|----------|---------------------|
| 펀드 결성 능력 | 결성 가능성 등            |
| 운용전략     |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
| 운용사      |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
| 운용인력     |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
| 기타       |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    |

\* 개인투자조합 평가항목 : 펀드 결성 능력, 운용역량, 사후관리 수준, 수익률, 액셀러레이팅 등